

사회복지법인 유은(唯恩)복지재단
2018년도 2 차 임 시 이 사 회 의 록

- * 일 시 : 2018년 11월 30일 (금요일) 13:30
- * 장 소 : 유은복지재단 문화관 회의실 (경북 안동시 남선면 지골길 18)
- * 임원총수 : 이사 7명, 감사 2명
- * 참석임원 : 이종만 대표이사, 임성진 이사, 장국환 이사, 장석준 이사,
김윤애 이사, 이윤수 감사.
- * 불참임원 : 박종공 이사, 고유나 이사, 권헌서 감사.

I 부 예 배

- * 일 시 : 2018년 11월 30일 (금요일) 13:30 ~ 13:45
- * 인 도 : 이종만 목사
- * 찬송가 96장을 다 같이 부른 후, 장국환 이사로 기도케 하다.
- * 임성진 목사가 성경 누가복음 4:24~30을 봉독하고 '예언자 예수님'이라는 주제의 설교를 한 후, 기도에 이어 축도로 예배를 마친다.

II 부 회 의

- * 일 시 : 2018년 11월 30일 (금요일) 13:45 ~ 14:50
- * 사 회 : 이종만 대표이사

1.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 권남규 사무국장이 재적이사 총 7명 중 5명 출석, 2명 불참을 보고하자 정관 제26조(이사회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에 의거 개회 정족수가 됨에 따라 의장인 이종만 대표이사가 인사 말씀을 한 후, 사회복지법인 유은복지재단(이하 '본 재단'이라 한다.) 2018년도 2차 임시이사회의 개회를 선언하다.

2. 전회의록 낭독 : 이종만 의장이 권남규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2018년도 07월 08

일 채택 된 2018년도 1차 임시이사회 회의록을 낭독하게 하다.

3. 경과보고 : 권남규 사무국장이 2018년도 1차 임시이사회 이후 본 재단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나눔공동체(이하 '본 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별첨자료 1, 1-1]의 서면 및 구두로 경과를 보고하다.

4. 안건상정 : 이종만 의장이 본 재단 및 본 시설의 운영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상정하자 임성진 이사의 동의와 장국환 이사의 재청으로 이의가 없어 만장일치로 상정할 것을 의결하다.

제 1호 : 2018년도 법인회계 및 시설일반회계(수익사업, 시도보조금, 후원금)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 의결의 건

제 2호 : 2019년도 법인회계 및 시설일반회계(수익사업, 시도보조금, 후원금) 예산(안) 심의 · 의결의 건

제 3호 : 임원(이사)개선에 관한 심의 · 의결의 건

제 4호 : 보통재산 취득에 관한 심의 · 의결의 건

제 5호 : 기타 안건 심의 · 의결의 건

5. 심의 · 의결사항

1) 안건 제 1호 : 2018년도 법인회계 및 시설일반회계(수익사업, 시도보조금, 후원금)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 의결의 건

이종만 의장이 상정하여 나누어 준 [별첨자료 2, 2-1, 2-2, 2-3]의 2018년도 법인회계 및 시설일반회계(수익사업, 시도보조금, 후원금) 추가경정 예산안을 권남규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상세 설명을 하게한 후 참석자 전원이 개별적으로 검토하게 하고 심의한 결과, 별첨 원안대로 받기로 임성진 이사의 동의와 장석준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자 전원이 이의가 없어 만장일치로 의결하다.

2) 안건 제 2호 : 2019년도 법인회계 및 시설일반회계(수익사업, 시도보조금, 후원금) 예산(안) 심의 · 의결의 건

이종만 의장이 상정하여 나누어 준 [별첨자료 3, 3-1, 3-2, 3-3]의 2019년도 법인회계 및 시설일반회계(수익사업, 시도보조금, 후원금) 예산안을 권남규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상세 설명을 하게한 후 참석자 전원이 개별적으로 검토하게 하고 심의한 결과, 별첨 원안대로 받기로 장석준 이사의 동의와 임성진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자 전원이 이의가 없어 만장일치로 의결하다.

3) 안건 제 3호 : 임원(이사 및 감사)개선에 관한 심의 · 의결의 건

이종만 의장이 [별첨자료 4]의 본 재단의 이사인 임성진 씨가 2019년 1월 10일 자로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자(이때 본 안건과 관련된 임성진 씨에게 잠시 자리를 비우게 하다) 심의한 결과, 이사 임성진 씨를 임기 3년인 2019년 1월 11일부터 2022년 1월 10일까지 본 재단 이사로 연임할 것을 김윤애 이사의 동의와 장국환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자 전원이 이의가 없어 만장일치로 의결하다.

이어서 이종만 의장이 [별첨자료 4]의 본 재단의 이사인 장국환 씨가 2019년 1월 10일 자로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자(이때 본 안건과 관련된 장국환 씨에게 잠시 자리를 비우게 하다) 심의한 결과, 이사 장국환 씨를 임기 3년인 2019년 1월 11일부터 2022년 1월 10일까지 본 재단 이사로 연임할 것을 임성진 이사의 동의와 장석준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자 전원이 이의가 없어 만장일치로 의결하다.

이어서 이종만 의장이 [별첨자료 4]의 본 재단의 이사인 장석준 씨가 2019년 1월 10일 자로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자(이때 본 안건과 관련된 장석준 씨에게 잠시 자리를 비우게 하다) 심의한 결과, 이사 장석준 씨를 임기 3년인 2019년 1월 11일부터 2022년 1월 10일까지 본 재단 이사로 연임할 것을 김윤애 이사의 동의와 장국환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자 전원이 이의가 없어 만장일치로 의결하다.

이어서 이종만 의장이 [별첨자료 4]의 본 재단의 감사인 권헌서 씨가 2019년

1월 10일 자로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자 심의한 결과, 감사 권헌서 씨를 임기 2년인 2019년 1월 11일부터 2021년 1월 10일까지 본 재단 감사로 연임할 것을 김윤애 이사의 동의와 임성진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자 전원이 이의가 없어 만장일치로 의결하다.

이어서 이종만 의장이 [별첨자료 4]의 본 재단의 외부감사인 이윤수 씨가 2019년 1월 10일 자로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자(이때 본 안건과 관련된 이윤수 씨에게 잠시 자리를 비우게 하다) 심의한 결과, 감사 이윤수 씨를 임기 2년인 2019년 1월 11일부터 2021년 1월 10일까지 본 재단 감사로 연임할 것을 장석준 이사의 동의와 임성진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자 전원이 이의가 없어 만장일치로 의결하다.

4) 안건 제 4호 : 보통재산 취득에 관한 심의 · 의결의 건.

이종만 의장이 상정하여 나누어 준 [별첨자료 5]의 2018년 1차 임시이사회 이후 보통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권남규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상세 설명을 하게 한 후 개별적으로 검토하게 하고 심의한 결과, 별첨 원안대로 받기로 장석준 이사의 동의와 임성진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자 전원이 이의가 없어 만장일치로 의결하다.

5) 안건 제 5호 : 기타 안건 심의 · 의결의 건.

이종만 의장이 상정한 기타 안건 심의 · 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의할 안건이 없으므로 심의를 마칠 것을 임성진 이사의 동의와 장석준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자 전원이 이의가 없어 만장일치로 의결하다.

6. 회의록채택 : 이상으로 심의 · 의결된 안건들의 정확무오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종만 의장이 작성된 회의록을 권남규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낭독케 하니, 수정 보완할 것이 없으므로 그대로 채택할 것을, 임성진 이사의 동의와 장국환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자 전원이 이의가 없어 만장일치로 의결하다.

6. 폐회선언 : 이상으로 모든 안건이 원만히 심의 · 의결되었으므로 폐회할 것

을 김윤애 이사의 동의와 장석준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자 전원이 이의가 없어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이종만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다.

* 기록자 : 사무국장 권남규 (인)

위 내용이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함.

2018년 11월 30일

사회복지법인 유은(唯恩)복지재단

대표이사 이종만 이 사 임 성 진

이 사 장 국 환 이 사 장 석 준

이 사 김 윤 애 감 사 이 윤 수